KOSHA GUIDE C - 54 - 2012

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 장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) 제1관(노천굴착작업) 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공송 전선로 철탑의 심형기초공사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가공송전선로 철탑공사에서 심형기초 공법을 적용한 기초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심형기초"라 함은 가공송전선로 철탑 기초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초공법의 일종으로 <그림 1>과 같이 구체부의 깊이가 구체부 원형단면 직경의 2배를 넘 는 것을 말한다.

